

금융생활에 필요한 모든 정보, 인터넷에서 「파인」 두 글자를 쳐보세요

“금융은 튼튼하게, 소비자는 행복하게”



경제의 틀을 바꾸면
미래가 달라집니다.



돈이 도는 활기찬 경제

	보 도 자 료				
	보도	2017. 3. 20.(월) 조간	배포	2017. 3. 17.(금)	

책임자	금감원 보험감독국장 진태국(3145-7460)	담당자	양진태 팀장 (3145-7471)
	생보험 시장자율관리본부장 김홍중(2262-6628)		박배철 부장 (2262-6681)

제 목 : 소비자 권익제고를 위한 변액보험 적합성 진단제도 개선 (「제2차 국민체감 20대 금융관행 개혁」 과제 ③-1-① 실행방안)

- ▶ 변액보험이 꼭 필요한 소비자만 가입할 수 있도록 적합성 진단의 검증력 제고
- ▶ 변액보험을 잘 아는 소비자 외에는 적합성 진단을 생략할 수 없도록 요건 강화
- ▶ 「펀드 적합도 평가」를 정비하여 고객별 맞춤형 펀드가 권유되도록 개선

I. 추진 배경

- 변액보험은 펀드 운용실적에 따라 투자 수익률을 확보하면서 보험금도 보장(최저보증옵션 가입시)받을 수 있는 생명보험상품*이나

* '16.9월말 기준 변액보험 적립금은 109.1조원, 수입보험료는 17.3조원(전체 생명보험 수입보험료의 20.5%)에 달하며 약 8.3백만건(국민 약 6명당 1건)이 가입

- 소비자에게 알맞은 보험상품을 권유하기 위한 절차인 「적합성 진단」이 다소 형식적으로 운영되고 있어 불완전판매의 주요 원인으로 작용

- 이에 금융감독원은 「제2차 국민체감 20대 금융관행 개혁」의 일환으로 생보협회, 업계와 공동으로 TF를 구성하여

- 진단방식을 합리화하는 등 변액보험 적합성 진단제도 전반에 대한 종합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하고자 함

II. 개선방안

1. 변액보험 적합성 진단의 검증력 제고

- ☐ 소비자가 장기 계약인 변액보험에 적합한지 여부를 판별할 수 있도록 계약유지능력(보험료 납입능력 등)에 관한 진단항목 등 추가*

* (현행) 4개 부문, 11개 문항 → (개선) 7개 부문, 16개 문항

- ☐ 변액보험 부적합자 판별항목* 중 하나라도 해당되는 경우** 판매권유를 금지

* 보험가입목적, 보험료 납입능력, 손실 감내수준 등 7개 질문

** 예) 손실 감내수준 질문에 대해 소비자가 “손실이 나면 안된다”를 선택한 경우
(현재는 부적합항목을 선택하여도 진단점수가 일정 수준 이상이면 가입 가능)

- ☐ 적합성 진단과정에서 정확한 답변을 유도하기 위해 「보험계약자 정보확인서」에 부적정 답변시 소비자의 불이익 안내를 강화*

* 원금손실, 손실의 귀속주체 등 핵심 단어는 굵은 글씨, 음영으로 강조

2. 모집과정에서 적합성 진단의 실효성 제고

- ☐ 변액보험에 관해 제대로 알고 있다고 인정되는 소비자에 한해 적합성 진단을 생략할 수 있도록 요건 강화*

* 「적합성 진단 불원(不願) 확인서」를 제출해서 진단을 생략할 수 있는 소비자
(현행) 모든 소비자 ⇒ (개선) 금융투자상품 거래 경험이 있는 자 등으로 제한

- ☐ 변액보험 가입에 부적합한 소비자가 가입을 원할 경우 소비자 스스로 변액상품 및 펀드를 선택하고 모집종사자의 권유를 제한

3. 소비자의 투자성향에 맞는 최적 펀드 권유

- ☐ 적합성진단시 소비자의 투자성향에 적합한 펀드를 선별하는 절차인 「펀드적합성 평가」를 거치도록 함

* 현재는 소비자가 변액보험에 적합한지 여부만 평가하고, 펀드의 수익률 등이 소비자별 투자성향에 맞는지 판단하는 「펀드적합성 평가」는 선택적으로 시행중

- ☐ 보험기간 중 보험 가입시점의 계약자 성향보다 높은 위험의 펀드로 변경신청시 계약자의 투자성향을 재평가하는 절차 신설

Ⅲ. 향후 계획

- 보험회사의 시스템 개발 등에 소요되는 기간을 감안하여 '17.7월 시행

* 생보협회는 금번 제도개선내용을 반영해서 「변액보험 표준계약권유준칙」 개정 예정

- 금융감독원은 앞으로 변액보험 판매과정에서 적합성 진단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 RAAS 평가 등 현장 검사시 중점 검사항목으로 점검할 예정

Ⅳ. 기대 효과 (국민들이 좋아지는 점)

① 소비자의 최적 상품 가입으로 변액보험 불완전판매 감소

- 변액보험에 가입하는 연간 80만명의 소비자가 본인의 성향을 제대로 알고 최적 상품에 가입하게 되어 변액보험 관련 민원('16년 상반기 2.2천건)이 크게 감소할 것으로 기대
- 특히, 소비자의 위험성향에 맞는 상품권유 및 펀드선택을 유도하여 소비자의 합리적 기대에 부응

② 적합성 진단의 실효성 제고에 따른 완전판매 문화 정착

- 「적합성 진단 불원확인서», 「부적합 보험계약 체결확인서」의 남용가능성에 대한 통제 강화로, 보험회사 스스로 적합성 진단을 강화하는 등 완전판매 문화가 정착될 것으로 예상

③ 보험산업에 대한 신뢰도 제고

- 고령자 등 취약계층에 대한 적합성 진단 강화로 모집단계에서 불완전판매가 감소하는 등 보험산업에 대한 신뢰도가 제고될 것으로 기대

V. 소비자 유의사항

① 적합성 진단과정에서 소비자는 투자성향 등을 보험회사에 있는 그대로 알려야 합니다

- 변액보험이 소비자에게 적합한지 여부를 정확하게 진단받기 위해서는, 진단을 받는 소비자가 적합성 진단항목에서 묻는 투자성향 등에 관해 보험회사에 사실대로 알릴 필요

② 「적합성 진단 불원확인서」나 「부적합 보험계약 체결 확인서」 작성은 신중하게 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 적합성 진단을 거치지 않고 변액보험에 가입하거나 진단결과에 맞지 않은 상품에 가입할 경우, 원금손실 등 모든 손해는 소비자가 부담하게 되므로 관련 확인서 작성을 신중하게 결정할 필요

* (사례) A씨는 적합성 진단절차가 번거롭다고 느껴 「적합성 진단 불원확인서」를 작성해서 변액보험에 가입한 후, 본인의 생각과 다른 상품인 것을 알고 가입을 후회

③ 변액보험은 조기에 해지할 경우 불이익(해지공제 등)이 크므로 장기간 유지할 수 있는지 충분히 생각한 후 가입할 필요가 있습니다

- 변액보험은 가입 초기에 해지하면 원금손실 가능성이 높아 장기간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므로, 보험료 납입여력 등을 꼼꼼히 따져보고 가입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

* (사례) B씨는 자녀의 결혼자금을 위해 모아둔 돈을 단기 재테크 목적으로 변액보험에 가입한 후 1년만에 해지했는데, 환급금이 예상보다 크게 적어서 부족한 결혼자금을 대출받음

④ 변액보험에 가입한 후 펀드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재평가 절차를 통해 본인에게 맞는 펀드를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 소비자가 보험가입 당시보다 높은 위험의 펀드(예 : 채권형 ⇒ 주식형)로 변경하고자 할 때는, 그 펀드가 본인에게 적합한지 확인할 수 있는 재평가절차를 거치는 것이 바람직

⑤ 변액보험 관련 유의사항 및 상품정보는 「파인」(fine.fss.or.kr), 「생명보험 협회 홈페이지」(www.kfia.or.kr)에 있으니 가입 전에 잘 활용하세요

변액보험 적합성 진단제도 개선방안

- 「제2차 국민체감 20大 금융관행 개혁」 과제 3-1-① 실행방안 -

2017. 3.



목 차

I. 추진배경	1
II. 현황 및 문제점	2
III. 개선방안	3
IV. 추진계획	9
V. 기대효과 [국민들이 좋아지는 점]	9
[붙임 1] 적합성 진단을 통한 변액보험 가입 절차	10
[붙임 2] 변액보험 적합성 진단항목 개선안	11

I. 추진배경

- 변액보험은 펀드 운용실적에 따라 보험금이 변동되는 실적배당형 상품으로
 - '16.9월말 기준 적립금 규모가 109.1조원(수입보험료 17.3조원)에 달하며 약 8.3백만건(국민 약 6명당 1건)이 가입되어 있는 대표적인 생명보험상품

	'13년	'14년	'15년	'16.9월
적립금(단위: 조원)	90.2	96.9	104.7	109.1
수입보험료(단위: 조원)	25.0	24.7	24.6	17.3

【변액보험의 개요】

- ◆ 변액보험은 보험(위험보장)과 펀드(실적배당)가 결합된 상품으로 적립금을 펀드에 투자하고
 - 펀드 운영실적에 따라 투자수익률을 확보하면서 보험금은 납입원금 이상 확보(최저보증옵션 가입시)할 수 있어 저금리, 인플레이션에 대비할 수 있는 상품

- 변액보험은 판매과정에서 상품의 위험성(투자손실 등)에 대한 안내가 미흡하고, 소비자의 투자성향에 맞지 않은 상품이 가입되는 등 불완전 판매로 인한 소비자들의 불만이 존재
 - 이에 금융감독원은 변액보험의 불합리한 관행 개선을 「제2차 국민체감 20대 금융개혁」 과제로 선정하여('16.6월)
 - 생보협회, 업계와 공동으로 TF를 구성하여 5대 분야* 15개 세부과제에 대한 개선을 추진중

- * ① 충분한 사전진단정보제공을 통한 최적상품 공급, ② 공시확대 및 계약관리 기능 강화, ③ 판매자에 대한 교육 강화 등, ④ 불완전판매 현장검사 실시 및 제재 강화, ⑤ 소비자의 합리적 기대에 맞춘 환급률 등 상품구조 개선

➡ 소비자가 최적 상품을 선택할 수 있도록 변액보험 가입과정의 첫 단계인 「적합성 진단제도」의 개선방안을 추진하고 함

II. 현황 및 문제점

1 적합성 진단제도 현황

① 적합성 진단의 의미

- 보험회사 또는 모집종사자가 소비자와 면담·질문을 통해 파악된 정보를 바탕으로 해당 소비자에게 알맞은 보험상품을 제공

② 적용 대상

- 변액보험에 관해 전문성이 부족한 일반보험계약자*를 대상으로 적합성 진단을 실시

* 전문보험계약자(금융회사, 상장법인 등)가 아닌 보험계약자

- 다만, 소비자가 진단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적합성 진단 불원확인서」를 제출하면 적합성 진단 없이 변액보험 가입 가능

③ 진단절차 및 항목

- (진단절차) ①모집종사자 등이 ②보험가입 권유 전에 ③보험계약자 정보확인서를 제공하고 ④면담·질문방식으로 얻은 결과를 이용하여 변액보험 가입이 적합한지 여부를 평가
- (진단항목) 보험가입 목적(질문항목 1개), 투자성향(5개), 재산상황(3개), 투자경험(2개) 등 4개 부문의 11개 질문

④ 진단결과

- (적합한 경우) 「적합성 진단보고서」를 제공하고 보험 가입 권유
- (부적합한 경우) [원칙] 보험가입 권유 금지, [예외] 소비자가 「부적합 보험계약 체결 확인서」를 작성한 경우는 가입 가능

<붙임 1> 적합성 진단을 통한 변액보험 가입 절차

1. 적합성 진단항목 측면

- ☐ 변액보험은 중도해지시 원금손실 가능성이 높은 상품으로 장기간 계약을 유지할 수 있는 소비자에게만 권유해야 함에도
 - 현행 진단항목에 이를 평가할 수 있는 항목이 없어 변액보험이 소비자에게 적합한지 검증하는데 한계

2. 적합성 진단방식 측면

- ☐ 소비자가 변액보험에 적합하지 않은 항목을 선택할 경우, 해당 소비자에 대한 변액보험 권유가 제한되어야 함에도
 - 보험회사가 진단방식으로 점수 방식*을 채택할 경우, 소비자가 부적합 항목을 선택**하더라도 가입이 가능

* 진단항목별 점수를 합산하여 일정 점수 이상이면 적합한 것으로 평가

** 예) 손실 감내수준 질문에 대해 소비자가 “손실이 나면 안된다”를 선택한 경우

3. 적합성 진단제도의 실효성 측면

- ☐ 불완전 판매를 방지하기 위해 원칙적으로 모든 소비자들에게 적합성 진단을 실시할 필요가 있으나
 - 변액보험에 관해 잘 알지 못하는 소비자도 「적합성 진단 불원확인서」를 작성하면 진단절차 없이 가입할 수 있는 문제가 존재

4. 펀드 적합성 평가 측면

- ☐ 소비자가 자신의 투자성향에 알맞은 변액보험의 펀드를 선택하기 위해서는 「펀드 적합성 평가」가 필요하나
 - 보험회사는 펀드 적합성 평가를 선택적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평가를 하는 경우에도 펀드수익률의 변동성은 고려하지 않고 있어 소비자가 투자성향 보다 높은 위험에 노출될 소지

Ⅲ. 개선방안

1. 변액보험 적합성 진단의 검증력 제고

가. 장기 계약의 특성을 반영한 진단항목 확충*

* (현행) 4개 부문, 11개 문항 → (개선) 7개 부문, 16개 문항

- (진단부문 확충) 소비자가 변액보험에 적합한지 여부를 정확하게 집어낼 수 있도록 **보험료 납입능력** 등을 추가(3개 부문, 5개 문항)
 - 보험계약 유지 : 장기계약인 변액보험의 **유지능력**을 진단할 수 있는 ①**보험료 납입능력**, ②**보험계약 유지능력** 부문 신설
 - **취약계층** : 고령자(65세 이상), 미성년자 등 변액보험의 **이해도**가 낮은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취약계층** 여부에 관한 질문 신설
- (진단항목 조정) 적합성 진단의 검증력 제고를 위해 실효성이 낮은 3개 진단항목을 **교체**(3개 삭제, 3개 추가)하는 등 **문항수 조정**

< 적합성 진단 평가항목 >

진단부문	문항수		차이(B-A)	비고
	현행(A)	개선(B)		
보험가입목적	1개	2개	1개	문항 1개 추가
재산상황	3개	3개	-	문항 1개 삭제/추가
<u>보험료납입능력</u>	-	2개	2개	<u>부문 신설</u>
<u>보험계약유지능력</u>	-	2개	2개	<u>부문 신설</u>
투자성향	5개	4개	△1개	문항 1개 삭제
투자경험	2개	2개	-	문항 1개 삭제/추가
<u>취약계층소비자*</u>	-	1개	1개	<u>부문 신설</u>
합 계	<u>11개</u>	<u>16개</u>	<u>5개</u>	

* 고령자, 미성년자 등 합리적 판단이 곤란한 자 등

나. 부적합 항목 중 하나라도 해당되는 경우 판매권유를 금지

- 소비자가 원금보존 등 변액보험 부적합 항목을 선택하더라도 가입이 가능한 현행 진단방식의 문제점을 개선하고자
 - 보험가입 목적, 보험료 납입능력, 손실 감내수준 등 7개의 질문을 선정하고
 - 소비자가 이들 질문중 어느 하나라도 부적합항목을 선택하여 답한 경우, 모집종사자는 해당 소비자에 대한 변액보험 권유 금지

< 주요 부적합항목 문항 >

진단 부문	질문	부적합 판단기준
보험가입 목적	가입희망 금융상품(①)	• “타 금융상품”(예적금, 펀드), “일반보험” 선택시
	변액보험 가입 목적(②)	• “단기재산증식” 목적 선택시
보험료 납입능력	보험료 납입 가능기간(⑦)	• “3년 미만” 선택시(단, 일시납 등 납입기간 3년 미만 상품 권유가능)
보험계약 유지능력	보험계약 최소 유지기간(⑧)	• “7년 미만” 선택시
투자 성향	투자시 핵심 고려사항(⑫)	• “원금은 반드시 보존되어야 한다” 선택시
	손실감내수준(⑭)	• “어떠한 경우에도 손실나면 안된다” 선택시
취약 금융소비자	취약금융소비자 해당 여부(⑯)	• “YES” 선택시(단, 투자경험이 있는 고령 투자자는 적합자로 판단)

주) 질문 옆의 번호는 (붙임 2) ‘변액보험 적합성 진단항목 개선안’의 질문 번호

다. 부적정 답변에 관한 소비자 유의사항 안내 강화

- 적합성 진단시 정확한 답변을 유도하기 위해 「보험계약자 정보 확인서」에 부적정 답변시 소비자의 불이익 안내를 강화
 - 소비자가 쉽게 알아 볼 수 있도록 원금손실, 손실의 귀속주체 등 핵심 단어는 굵은 글씨, 음영으로 강조하는 등 가독성 제고

< 보험계약자 정보확인서 안내문 >

- 회사 측의 보험계약자 정보 관련 질문에 대해 보험계약자가 **허위** 또는 **불성실한 답변**을 할 경우 **부적합한 보험계약을 권유**하게 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발생하는 **원금손실 등 모든 손해**는 **계약자 본인**이 부담할 수 있습니다.
- 보험설계사 등이 '보험계약자 정보확인서'를 **대신 작성**하거나 소비자에게 **사실과 다른 내용의 답변**을 기재하도록 **유도***하는 것은 **불완전판매**에 해당됩니다.
* (예시) '귀하는 보험계약을 최소 언제까지 유지할 생각입니까?'라는 질문에 대하여 실제 유지를 원하는 기간이 '7년 이내'인데도 보험설계사 등이 그렇게 대답하면 가입이 거절될 수 있다며 '10년 이내'로 답변토록 유도하는 경우 등
- **완전판매모니터링**("해피콜") 과정에서 **불완전판매**로 확인되는 경우, **보험 가입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2. 모집과정에서 적합성 진단의 실효성 제고

가. 「적합성 진단 불원확인서」 허용요건 신설

- ☐ 소비자에게 적합성 진단을 실시하지 않고 **변액보험**을 판매하는 **불합리한 관행** 개선을 위해
 - 원칙적으로 모든 고객에게 적합성진단을 실시하되, 소비자의 직업, 투자경험 등을 감안하여 변액보험을 제대로 알고 있다고 인정될 경우에만 「적합성 진단 불원확인서」를 허용
 - 소비자의 판단으로 부적합한 상품을 가입함에 따른 원금손실 등의 손해는 소비자가 부담한다는 **유의사항**을 **확실히 고지**

< 적합성 진단 불원확인서 안내문 >

소비자 유의사항	• 적합성 진단을 받지 않고 본인의 판단에 따라 변액보험 계약을 체결하며, 이로 인해 원금손실 등 손해를 보더라도 이는 계약자 본인의 책임입니다
소비자 유형 확인	☐ 금융투자상품(변액보험 포함)을 1회 이상 거래한 경험이 있는 자 ☐ 전·현직 보험업 종사자(임·직원, 보험계리사, 보험설계사, 손해사정사 등) ☐ 금융회사에서 5년 이상 근무한 자 ☐ 비금융회사(일반기업)에서 재무 또는 회계분야에서 5년 이상 근무한 자

나. 부적합 진단시 상품권유기준 마련

- 소비자가 부적합 상품의 가입을 요구하는 경우, 모집종사자가 준수해야 할 기준 마련
 - 소비자가 진단결과와 상이한 상품의 안내를 요구하면 보험설계사 등은 변액상품, 펀드군의 목록만 제시 ⇒ 소비자 스스로 선택

< 부적합 진단시 상품권유기준 >

- ① 부적합 진단시 : 상품권유 불가능 안내
- ② 소비자가 부적합 상품의 안내 요구시 : 적극적 안내 금지
 - ▶ 소비자가 특정 변액상품, 펀드의 세부 내용을 문의한 경우에 한해 답변
- ③ 소비자의 가입의사 확인시 : 부적합 상품가입의 위험 고지
 - ▶ 고위험 변액상품 가입에 따른 원금손실 등 위험성을 충분히 고지
 - ▶ 소비자가 이를 이해하였음을 자필서명 등으로 확인

3. 소비자의 투자성향에 맞는 펀드 권유

가. 투자성향을 반영하는 「펀드 적합성 평가」 정비

- 적합성 진단시 소비자의 투자성향에 적합한 펀드를 선별하는 절차인 「펀드 적합성 평가」를 반드시 거치도록 하고
 - 투자위험 등 계약자 성향 및 펀드 종류(위험등급)를 세분화(3단계 → 5단계)해서 이를 활용하는 한편
 - 펀드 종류(위험등급)를 구분할 때 현행 「위험자산 편입 비중」 외에 「펀드 수익률 변동성」도 감안토록 개선

< 펀드 적합도 평가 개선방안 >

- ① (계약자 성향) 적합성진단 항목 중 위험상품 투자경험, 손실감내 수준 등 6개 질문항목을 분석하여 5단계 이상으로 분류

◆ 투자위험성향 파악항목(6개 질문)

- ▶ 펀드변액보험 투자경험기간(질문⑩)
- ▶ 투자해 본 경험이 있는 금융상품 종류(질문⑪)
- ▶ 투자시 원금보존 여부(질문⑫)
- ▶ 연간 기대수익률(질문⑬)
- ▶ 투자원금기준 손실감내 수준(질문⑭)
- ▶ 펀드내 주식 또는 주식형상품 비중(질문⑮)

◆ 계약자성향 5단계 분류(예시)

- ▶ 위험회피형
- ▶ 안정추구형
- ▶ 위험중립형
- ▶ 적극투자형
- ▶ 위험선호형

주) 질문 옆의 번호는 (붙임) 변액보험 적합성 진단항목 개선안의 질문 번호

- ② (펀드 위험등급) 주식형 펀드 등 위험자산 편입 비중, 펀드 수익률 변동성*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펀드별 위험등급**을 부여

* 최근 3년간 연환산 수익률의 표준편차

** ① 초고위험, ② 고위험, ③ 중위험, ④ 저위험, ⑤ 초저위험 등 5개 등급

< 계약자 성향과 펀드 분류기준에 따른 펀드 권유 >

구 분		특별계정(펀드) 분류				
		초고위험	고위험	중위험	저위험	초저위험
계약자 성향	위험회피형	권유 불가				권유 가능
	안정추구형	권유 불가			권유 가능	
	중립형	권유 불가		권유 가능		
	적극형	권유 불가	권유 가능			
	위험선호형	권유 가능				

나. 보험기간 중 펀드변경 신청시 재평가 절차 신설

- ☐ 보험계약자가 보험기간 중 보험가입시점의 계약자 성향보다 높은 위험의 펀드로 변경 신청을 할 경우 계약자의 투자성향을 재평가하는 절차를 마련
- 재평가 결과, 변경하고자 하는 펀드가 계약자의 투자성향에 비해 고위험 펀드인 경우 변경이 불가함을 안내
 - 계약자가 부적합 보험계약 체결 확인서를 작성하고 고위험 펀드에 투자를 원할 경우, 투자손실 등 불이익을 충분히 고지

IV. 향후 계획

- 보험회사의 시스템 개발 등에 소요되는 기간을 감안하여 '17.7월 시행

* 생보협회는 금번 제도개선내용을 반영해서 「변액보험 표준계약권유준칙」 개정 예정

- 금융감독원은 앞으로 변액보험 판매과정에서 적합성 진단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주기적으로 평가하고
 - RAAS 평가 등 현장 검사시 중점 검사항목으로 점검할 예정

V. 기대 효과 (국민들이 좋아지는 점)

① 소비자의 최적 상품 가입으로 변액보험 불완전판매 감소

- 변액보험에 가입하는 연간 80만명의 소비자가 본인의 성향을 제대로 알고 최적 상품에 가입하게 되어 변액보험 관련 민원('16년 상반기 2.2천건)이 크게 감소할 것으로 기대
- 특히, 소비자의 위험성향에 맞는 상품권유 및 펀드선택을 유도하여 소비자의 합리적 기대에 부응

② 적합성 진단의 실효성 제고에 따른 완전판매 문화 정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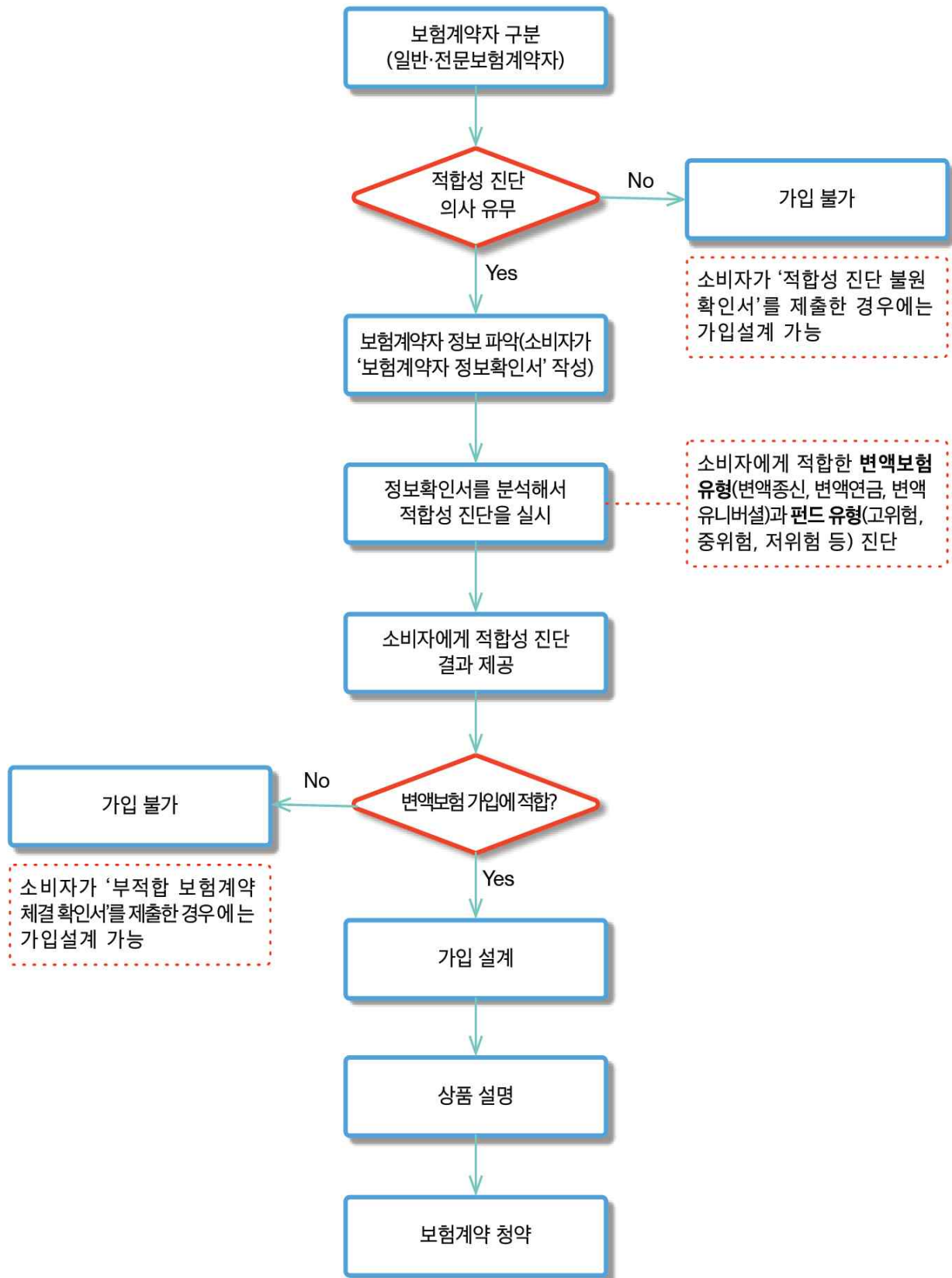
- 「적합성 진단 불원확인서», 「부적합 보험계약 체결확인서」의 남용가능성에 대한 통제 강화로, 보험회사 스스로 적합성 진단을 강화하는 등 완전판매 문화가 정착될 것으로 예상

③ 보험산업에 대한 신뢰도 제고

- 고령자 등 취약계층에 대한 적합성 진단 강화로 모집단계에서 불완전판매가 감소하는 등 보험산업에 대한 신뢰도가 제고될 것으로 기대

붙임 1

적합성 진단을 통한 변액보험 가입 절차



붙임 2

변액보험 적합성 진단항목 개선안

※ 각 질문별로 2~6개의 답변 항목 중 소비자가 선택

보험가입 목적	① 가입하고자 하는 금융상품은 어떤 것?	신설, ★
	② 보험계약 중 변액보험을 가입하는 목적?	★
재산상황	③ 월평균 소득?	
	④ 월평균 소득에서 보험료 지출이 차지하는 비중?	
	⑤ 보험료 재원으로 사용할 수 있는 순자산?	신설
보험료 납입능력	⑥ 변액보험의 보험료로 낼 수 있는 금액?	신설
	⑦ 퇴직 등으로 수입 감소시 보험료 납입이 가능한 기간?	신설, ★
보험계약 유지능력	⑧ 보험계약의 최소 유지기간?	신설, ★
	⑨ 보험계약을 중도해지할 가능성?	신설
투자 경험	⑩ 변액보험, 펀드 등 금융투자상품 투자 경험기간?	신설
	⑪ 현재 가입중이거나 가입했던 금융투자상품?	
펀드적합도 등 투자성향	⑫ 원금 보존과 투자수익률 중 어느 쪽이 중요?	★
	⑬ 투자상품 가입시 기대하는 연간 수익률?	
	⑭ 감내할 수 있는 손실의 수준?	★
	⑮ 특별계정 펀드에서 주식이나 주식형 상품의 비중?	
취약금융소비자 여부	⑯ 고령자, 미성년자 등 취약 금융소비자 여부?	신설, ★

1) 신설 : 신설되는 항목(8개), ★ : 원스트라이크아웃항목(7개)

2) 현재의 11개 항목 중 3개를 삭제하고 8개를 신설

금융감독원은 「국민체감 20대 금융관행 개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융거래 과정에서 경험한 불합리한 금융관행 및 불편사항에 대한 의견은 '금융관행 개혁 포털'(<http://better-change.fss.or.kr>) 내 '국민 참여방'으로 제보 바랍니다.

☞ 본 자료를 인용하여 보도할 경우에는 출처를 표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http://www.fss.or.kr>)